

감사결과보고서

-취약시기(연말) 기강점검-

감사기간: 2013.12.18. ~ 12.20. (3일간)

감사인원: 4명

지적사항: 1건 (시정_회수)

2013. 12.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 목적

이번 기강감사는 “취약시기(연말) 복무점검” 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·비위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반부패·청렴 윤리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함

2. 감사대상

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5개 본부 내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함.

3. 감사기간 및 인원 등

2013.12.18.(수) ~ 2013.12.20.(금) 3일간 2개 반 4명으로 구성

○ 점검총괄 : 청렴윤리부장

- 1반: 차장 ○○○, 과장 ○○○

- 2반: 차장 ○○○, 과장 ○○○

4. 감사 중점사항

○ 임직원 복무점검

- 복무관리(출장, 외출, 휴가, 특근 등) 기본 복무관리 준수 여부

○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
- 공용재산의 사적사용, 음주운전 및 도박 등 사행성 행위 여부

○ 기타 점검

-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·유지 여부, 문서보안 및 공인인증서 관리

II. 감사처분현황

감사결과 처분요구

시 정

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홀
대 상 기 관 ○○○본부 ○○○지사
내 용

「복무규정」 제6조(초과근무)에 따르면 “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형편상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 시간 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는 특근 명령부에 따라 명령하도록 하고 있고, 초과 근무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”고 되어 있다.

또한, 경영지원실-6569(2013.09.26.) 초과근무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시행과 재무부 업무연락(2013.10.29.) 초과근무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ERP 처리 안내에 따라 기술직 5급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(초과근무수당 지급: 16시간 기준)으로 정해져 있다.

그런데도 2013년 11월 특근 명령부를 작성하면서 기술직 5급 ○○○의 병가기간(2013.11.25. ~ 2013.12.02.) 중인 2013.11.30.(토)에 초과근무(7.5시간)를 시행한 것으로 작성하여, 직급별(기술직 5급) 초과근무시간 기준(20시간)을 근무한 것으로 특근 명령부를 작성 아래 현황과 같이 185,740원을 초과 지급 하였다.

【 현 황 】

성 명	직 급	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		회수금액	비 고
		정	오		
○○○	기술직5급	185,740원	371,480원	185,740원	8시간(정) =>16시간(오)

조치할 사항

○○○본부장은 착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(185,740원)을 회수조치하고 소속직원들에게 특근 명령부 작성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